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1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사유에 ‘정당한 사유’ 명시〉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4728호)

2024. 1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사유에 ‘정당한 사유’ 명시	2

I.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정부제출

나. 제 출 일 : 2024. 10. 16.

다. 회부연월일 : 2024. 10.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지정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해당 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 실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사유에 ‘정당한 사유’ 명시

가. 개정안 요지

- 현행법 제23조제2항에¹⁾ 따라 지정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3조제3항).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전문인력의 양성) ①·② (생 략)	제23조(전문인력의 양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	③ ----- ----- ----- -----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3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및 중·장기 수급 전망 수립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설립 또는 지원
3.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4. 각급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관련 교육의 지원
5.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u>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u>	3. <u>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기관</u>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현행법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 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학교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전문인력 양성 기관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취소 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²⁾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취소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3조(전문인력의 양성)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 및 지원 내용,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에³⁾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취소 가능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취소 가능
- 개정안은 지정취소 사유 중 세 번째 경우에 대하여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는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는 환경적·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지정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현재까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사례가 없고, 일반적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행위는 처분 시 정당한 사유 등을 고려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개정안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취소 시 환경적·외부적 요인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함으로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운영상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참고로 개정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국정과제

3)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전문인력의 양성)

②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마련되어 있을 것
2.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육시설 및 장비가 확보되어 있을 것
3.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전문 교수요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 있을 것
4. 교육과정 운영경비의 조달 방안이 마련되어 있을 것

1-2)’와 관련하여 법제처에서 ‘영업취소사유 합리화를 위한 법령 정비’에 따라 제출된 법안임. 법제처의 ‘정당한 사유’ 관련 정비 대상 법률은 총 25개로 구체적인 법률은 다음과 같음.

〈‘정당한 사유’ 관련 정비대상 법률 목록〉

연번	법률명		현행 취소사유
1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 제1항 제3호	· 부가통신사업을 신고 또는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폐업명령 가능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3조 제3항 제3호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지정취소 가능
3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제3호	· 클라우드컴퓨팅 교육기관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지정취소 가능
4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 제2호	· 외국교육기관이 개교예정일부터 1년 이상 개교하지 아니한 경우 설립승인 취소 가능
5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 제조·판매업자가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 취소 가능
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3호	·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대부업 등록 취소 가능
7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항 제5호	·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취소 가능
8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1호	·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까지 사업장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장을 착공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사업계획 승인과 사업장 건축허가의 취소 등 가능
9	식물방역법	제41조 제2항 제2호	· 허가를 받은 날 또는 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지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가능
10	초지법	제12조 제1호	·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가 1년 이상 영업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 취소 가능

연번	법률명		현행 취소사유
11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 5 조 의 6 제 1 항 제 5 호	• 초지조성허가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시작 후 1년 이상 사업을 중지한 경우 허가 취소 가능
1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제3호	• 장애인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이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정 취소 가능
13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21조 제4항 제3호	•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지정일로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지정 취소 가능
14	전기공사업법	제21조 제2호	• 지정교육훈련기관이 3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교육훈련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지정 취소 가능
		제28조 제1항 제7호	• 전기공사업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공사업을 휴업한 경우 등록 취소 가능
15	아이돌봄 지원법	제9조 제2항 제3호	• 아이돌보미 교육기관이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정 취소 가능
16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제2호	• 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개발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 취소 등 가능
17	여수 세계 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2 제 2 호	•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 취소 등 가능
18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4호	• 항만운송사업자가 사업 수행 실적이 1년 이상 없는 경우 등록 취소 등 가능
		제26조의5 제1항 제4호	•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사업 수행 실적이 1년 이상 없는 경우 등록 취소 등 가능
19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조 제1항 제2호	•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 취소 가능
20	건설폐기물의 재활 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제3호	• 임시보관장소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건설폐기물이 반입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건설폐기물이 반입되지 아니한 경우 승인 취소 가능

연번	법률명	현행 취소사유
2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호 · 인가를 받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 공사 시작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완공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경우 인가 취소 가능
		제17조 제5호 · 인가를 받은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온배수 재이용시설 설치 공사시작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완공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경우 인가 취소 가능
22	수도법	제63조 제1항 제1호 · 인가를 받은 수도사업 또는 전용수도의 공사 시작 예정일 또는 공사 완공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경우 인가 취소 가능
		제63조 제1항 제2호 · 인가를 받은 수도사업의 급수 개시 예정일부터 6개월이 지나도 수돗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 인가 취소 가능
23	폐기물관리법	제27조의2 제2항 제2호 ·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실적이 없는 경우 등록 취소 등 가능
24	환경기술 및 환경 산업 지원법	제16조의6 제1항 제5호 · 환경컨설팅회사가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등록 취소 등 가능
25	환경보건법	제23조의2 제5항 제4호 ·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 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검사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실적이 없는 경우 지정 취소 등 가능

자료: 법제처 제출자료 재구성

문 의 처

02)6788-5228